

# POSTECH 국가연구소 운영세칙

제정 : 2026. 03. 16.

## 제 1 장 총 칙

**제1조(목적)** 본 세칙은 POSTECH 국가연구소(이하 연구소)의 자율적이고 혁신적인 연구환경 조성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적 연구를 선도하는 연구소 운영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## 제 2 장 조직 및 직 제

### 제2조(조직구성)

- ① 연구소에는 연구소장을 둘 수 있으며, <별표1>과 같이 연구소 산하에 부(실)·팀 등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.
- ② 연구소 내에 하부조직을 신설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단, 기존 하부조직의 명칭 변경 또는 기능 조정 등 조직 개편 사항은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으며, 해당 내용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### 제3조(주요직제)

- ① 연구소에는 소장을 두며,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관할 업무를 통할한다.
- ② 연구소에는 교원 또는 5급 이상의 직원을 부소장으로 둘 수 있으며, 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고 소장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직무 수행이 어려울 때,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③ 연구소에는 연구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다.

### 제4조(보직임명 및 권한)

- ① 연구소장은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, 연구소 중장기 연구전략 수립, 인사, 예산 등의 연구소의 업무를 총괄한다.
- ② 하부조직 부서장은 교원, 5급 이상 직원 또는 책임급 이상 연구계약직 중에서 임명할 수 있으며, 소장의 제청에 따라 총장이 임명한다.
- ③ 임명 기준에 대해 임용권자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예외를 둘 수 있다.

## 제 3 장 인 력 및 재 정

### 제5조(인력운영)

- ① 연구소는 중장기 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하고, 연구소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시행할 수 있다.

- ② 인력 운영에 관한 제도는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침으로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.
- ③ 모험적 연구를 장려하고 후속 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연구소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.
- ④ 연구소는 우수한 연구자의 연구 몰입환경 조성을 위하여 연구자의 강의 및 행정 업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.

**제6조(재정운영)**

- ① 연구소는 블록펀딩 방식으로 연구비를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.
- ② 연구소의 재정은 연구소장이 관리/운영하며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책임을 진다.
- ③ 연구소는 예산 항목 간 자율 전환이 가능하며, 정기적인 재무보고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.

## 제 4 장 운영 및 평가

**제7조(운영체계)**

- ① 연구소는 연구 분야, 조직 운영, 인력 구성, 재정 집행에 있어 자율권을 가진다.
- ② 연구소의 지속 가능 성장과 주요사항의 적법한 심의의결을 위해 총장 주재의 운영위원회와 각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소 외·내부를 관리 운영한다.
- ③ 연구소 운영 관련 주요 사항은 분야별로 각 전문위원회에서 심의하며, 필요 시 외부 자문단을 둘 수 있다.
- ④ 연구소는 연구성과의 체계적 축적 및 활용을 위해 데이터 관리 계획을 수립·운영할 수 있다.

**제8조(운영위원회)**

- ① 연구소는 지속가능성장을 위하여 대학차원에서의 연구소 운영 관련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운영위원회를 둔다.
- ② 총장을 위원장으로 하고, 부총장과 연구처장, 교무처장, 기획처장, 연구소장, 부소장, 소장소속 학과장을 당연직으로 하며, 그 외 필요 시 내·외부 위원은 총장이 별도 임명하여 15인 내외로 구성한다.
-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,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- ④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,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-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.
- 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 - 1. 연구소 예산배분에 관한 주요사항
  - 2. 연구소 공간배분에 관한 주요사항
  - 3. 연구소 인재유치에 관한 주요사항
  - 4. 연구소 지속가능성장에 관한 주요사항
  - 5. 기타 연구소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들이 발의하는 주요사항

**제9조(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)**

- ① 연구소는 연구소 운영 및 산하 연구단의 연구개발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기능별 전문위원회를 둔다.

- ② 전문위원회는 연구·기획위원회, 교육위원회, 산학협력위원회, 임상위원회, 자체평가위원회, 행정실무위원회로 구성된다.
- ③ 연구·기획위원회, 자체평가위원회, 실무위원회의 경우 소장을 위원장으로 하며, 교육위원회는 소장 소속 학과장, 산학협력위원장은 부소장으로 한다.
- ④ 각 전문위원회의 구성, 위원의 수 및 당연직·임명직 위원의 구분은 <별표 2>의 전문위원회 구성표에 따르며, 각 위원회별로 7인 내외로 구성한다.
-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,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- ⑥ 각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 다만,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거나 총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.
- ⑦ 각 전문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며,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.
- ⑧ 각 전문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 - 1. 연구기획위원회
    - 가. 사업기획 및 중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
    - 나. 연구개발에 관한 전략 및 운영에 관한 사항
    - 다. 연구소 조직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
  - 2. 교육위원회
    - 가. 연구소 교육과정 및 교육계획에 관한 사항
    - 나. 연구소 소속 연구원 및 학생 교육·양성에 관한 사항
  - 3. 산학협력위원회
    - 가. 산학협력에 관한 사항
    - 나. 지식재산권 및 기술사업화에 관한 사항
    - 다. 기술이전 및 외부협력에 관한 사항
  - 4. 임상위원회
    - 가. 임상연구 수행에 관한 사항
    - 나. 규제 및 인허가 관련 검토에 관한 사항
    - 다. 병원 협업과 관한 사항
  - 5. 자체평가위원회
    - 가. 연구성과 및 운영성과에 대한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
    - 나. 성과관리 및 개선방안 도출에 관한 사항
  - 6. 행정실무위원회
    - 가. 연구소 운영에 관한 실무사항
    - 나. 연구소 행정 및 운영조정에 관한 사항
    - 다. 기타 연구소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⑨ 각 전문위원회의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소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**제10조(정보공개 및 감사)**

- ① 블록펀딩이 적용된 연구소의 예산 집행 및 성과 현황은 정기적으로 공개한다.
- ② 대학은 연구소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 시 내부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, 그 결과는 연구소에 통보한다.
- ③ 감사를 통해 발견된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소에 시정 요구를 할 수 있으며, 중대한 위반에 대해서

는 예산 환수 및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다.

④ 감사는 연구소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행한다.

**제11조(연구책임자의 직무수행 및 복무관리)** 소장은 매 회계연도 기준으로 해외 체류기간이 연속적으로 6개월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
**제12조(지식재산권의 확보 및 귀속)** 국제공동연구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지식재산권의 확보 및 귀속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, 연구소가 최소 50퍼센트 이상의 권리지분을 확보하여야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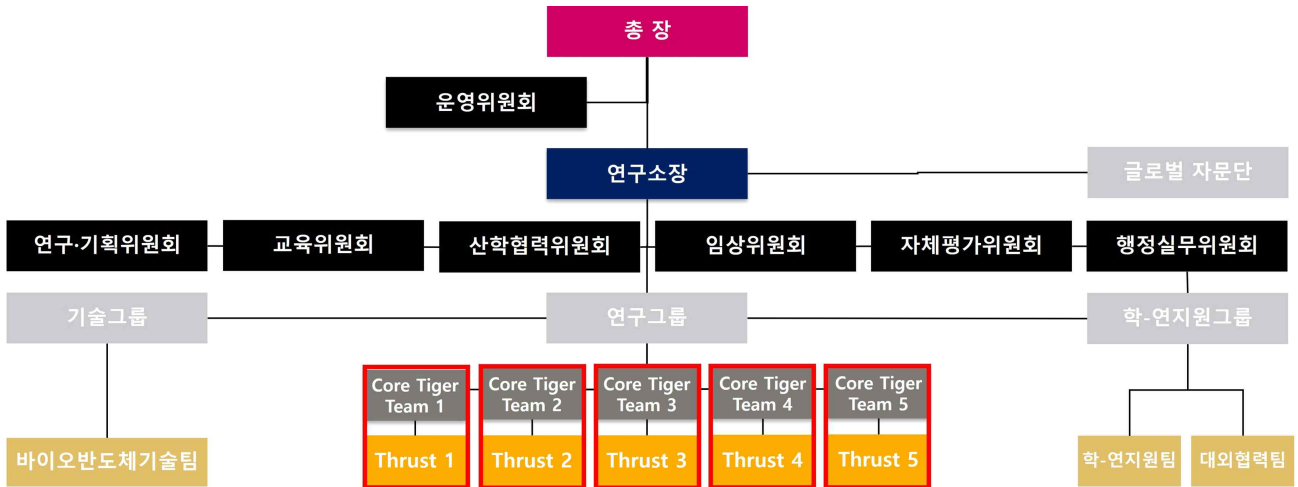
## 제 5 장 기 타

**제13조(준용)** 이 세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학부설연구소 운영규정 및 대학 제규정을 준용한다.

## 부 칙

이 규정은 2026년 3월 16일부터 제정, 시행한다.

<별표1>



<별표2>

